

■ 석탄산업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2. 6. 21.>

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(제14조제1항 관련)

1. 연탄제조업

시설기준 \ 지 역	특별시 및 광역시	도·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
저 탄 장	600㎡ 이상	300㎡ 이상
동력운전기	2대 이상	1대 이상
품질분석시험시설	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	

2. 기타 가공탄제조업

가. 입상 및 괴탄

구 분 \ 규모/년	5천톤 이상	5천톤 미만
저 탄 장	600㎡ 이상	300㎡ 이상
시 설	스크린(20T/H)	1대 이상
	품질분석시험시설	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

나. 마세크탄

구 분 \ 규모/년	5천톤 이상	5천톤 미만
저 탄 장	300㎡ 이상	200㎡ 이상
시 설	성형기(20T/H)	1대 이상
	보일러시설	1대 이상
	혼합시설	1대 이상
	건조시설	1대 이상
	품질분석시험시설	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

다. 무연 코크스

구 분 \ 규모/년	5천톤 이상	5천톤 미만
저 탄 장	300㎡ 이상	200㎡ 이상
시 설	선탄시설	1대 이상
	제탄시설	1대 이상
	건류시설	1대 이상
	품질분석시험시설	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

라. 특수탄

구 분 \ 규모/년	5천톤 이상	5천톤 미만
저 탄 장	300㎡ 이상	200㎡ 이상
시 설	제탄시설	1대 이상
	품질분석시험시설	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